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주민께서는 공고된 사용허가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23일

예 천 군



1. 사용허가 신청 내역

신청 위치 (인접 지번)	지목	사용 면적 (㎡)	사용허가 목적	허가기간
예천읍 대심리 846-14번지 (대심리 447-1번지)	구거	0.25	통신전주(IP전주) 설치	허가일로부터 10년
예천읍 통명리 652번지 (통명리 545번지)	구거	40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진·출입로 설치	허가일로부터 10년
보문면 승본리 485번지 (승본리 467번지)	구거	55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진·출입로 설치	허가일로부터 10년
감천면 덕율리 1390번지 (덕율리 1285번지)	구거	14	태양광발전시설의 배수시설 설치	허가일로부터 10년
호명면 원곡리 500-8번지 (원곡리 15번지)	구거	15	동·식물관련시설(축사)의 진·출입로 설치	허가일로부터 10년

2.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2. 08. 23. ~ 2022. 09. 06.

3. 열람장소 및 열람방법 : 예천군청 농촌활력과(농업기반팀)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열람.

4. 의견제출 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5. 기타 문의사항 : 예천군 농촌활력과 농업기반팀(☎054-650-6567)